

증평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[2009. 11. 2 규칙 제161호]

일부개정 2014. 10. 31 규칙 제252호
일부개정 2017. 12. 28 규칙 제329호
(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)
일부개정 2019. 12. 26 규칙 제372호
(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4. 10. 31, 2017. 12. 28>

제2조(적용범위) 담배소매인(이하 “소매인”이라 한다) 지정과 관련하여 「담배사업법」, 「담배사업법 시행령」 및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(이하 각각 “법”, “시행령”,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소매인의 지정기준 등) ①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. <개정 2014. 10. 31, 2017. 12. 28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. 10. 31, 2017. 12. 28>

1. 역·버스터미널·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·선박 등의 교통 수단
2. 공공기관·공장·군부대·운동경기장 등의 시설
3. 유원지·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
4.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,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5. 백화점·쇼핑센터 등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연면적 3,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
6.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,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

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

④ 담배자동판매기 운영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. 다만,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 및 감독이 가능하고 「국민건강

증진법 시행령」 제15조에 따라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0. 31>

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. 다만, 제2항제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. <개정 2014. 10. 31>

제4조(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및 면적측정방법)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「도로교통법」 제8조,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(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)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. <개정 2014. 10. 31>

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및 이면도로는 「도로교통법」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③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을 말하며,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. 10. 31, 2019. 12. 26>

1. 면적 측정시 건물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한다.
2. 내벽 안쪽의 면적 중 냉장고·계산대(뒷공간 포함)·진열장·현금지급기·에어컨·식음(식)대·워크인쿨러(상품진열부분포함) 및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공간은 포함되나 휴게실·화장실·매장 내 건물기둥, 창고, 소비자편의시설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공간은 제외한다.

제5조 삭제 <2014. 10. 31>

제6조(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) ①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폐업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공고기간은 다음과 같으며, 공고기간 내 지정신청 기간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0. 31>

1. 소매인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및 신축된 상가 지역 등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.
2.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의 공고기간은 14일 이

상으로 한다.

3. 공고장소는 증평군청, 읍·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로 한다.

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신축 상가 등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실시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 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소매인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부칙(2014. 10. 31 규칙 제252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7. 12. 28 규칙 제329호, 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9. 12. 26 규칙 제372호,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
일괄개정 규칙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